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

□ 금감원은 치명적 질병보험(Critical Illness; 이하 CI보험)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가입시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함.

o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최근 판매가 급증하면서 FY2009 전년대비 10.1% 증가한 8조 3,386억원을 시현함.

o CI보험이 소비자 이해도가 낮고 기존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존재함.

□ CI보험만이 가지는 장·단점이 존재하는 바, CI보험 가입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타보험(예: 건강보험)과의 차별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함.

o 건강보험과는 달리 CI보험은 '중대한 질병, 중대한 수술, 중대한 화상 및 부식'의 정의를 질병의 심도를 반영하여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.

o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해 고액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장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단점이 있음.

o CI보험이나 종신보험 모두 보험금 총액은 동일하나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일부 CI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여 CI보험의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약 30~40% 높음.

-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이 서로 동일함.

o 2010년 6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개정 및 시행으로 6월부터는 CI보험 가입시 피보험자가 다른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고지사항만 답변이 가능함.

- 단, CI보험이 고액보장임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여부 및 가족력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추가가 가능함.

(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, 금감원 보험계리실, 7/22)